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8구합87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본부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7, 3층(진북동, 우성아파트상가)

대표자 본부장 노병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이두규

피 고 전라북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태희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전북고속

전주시 덕진구 가리내로 30(금암동)

대표이사 황의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송, 담당변호사 심병연

변 론 종 결 2019. 5. 2.

판 결 선 고 2019. 5. 23.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 가. 2018. 1. 16.자 별지 1 기재 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하고,
나. 2018. 1. 31.자 별지 2 기재 심의자료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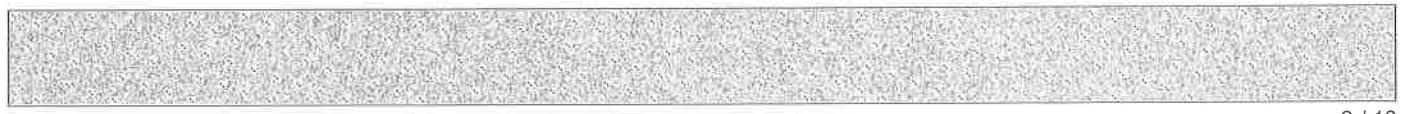
이 유

1. 처분의 경위

- 가. 전라북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용역보고서에 관한 처분
- 1) 원고는 2018. 1. 5. 피고에게 2010.부터 2017.까지의 별지 1 기재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2) 피고는 2018. 1. 16. 이 사건 보고서가 전라북도 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라 한다)²⁾의 경영실태, 운송수입, 운송원가 등 해당 업체의 경

1) 피고는 별지 2 기재 심의자료 중 2017. 8. 28.자 심의자료에 첨부된 「전라북도 2017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중간보고」를 이 법원의 비공개 열람·심리를 위해 제출하였으나, 이는 별지 1 기재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전라북도 버스지원 심의위원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잠정적·미확정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최종보고서의 공개를 구하는 이상 중간보고서의 공개를 구할 실익이 없는 점, 별지 1 기재 보고서 역시 별지 2 기재 심의자료 중 2017. 10. 30.자 심의자료에 첨부된 자료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위 심의자료와는 별개로 별지 1 기재 보고서의 공개를 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취지에 최종보고서인 별지 1 기재 보고서와 별지 2 기재 심의자료 외에 별도로 2017. 8. 28.자 심의자료에 첨부된 「전라북도 2017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중간보고」의 공개를 구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2)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외에도 유한회사 호남고속, 주식회사 전주고속, 주식회사 대한고속, 주식회사 안전여객 등 4개 업체가 여기에 해당한다.





영상·영업상 운영상황 및 비밀에 관한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2018. 1. 26.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³⁾.

나.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 심의자료와 그 결과에 관한 처분

1) 원고는 2018. 1. 18. 피고에게, 2017. 3. 31.부터 같은 해 12. 12.까지 5회에 걸쳐 개최된 전라북도 버스지원심의위원회(이하 '이 사건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자료와 결과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8. 1. 31. 위 심의결과는 공개하였으나, 별지 2 기재 심의자료(이하 '이 사건 심의자료'라 한다)는 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로부터 압력 등으로 인해 심의위원들의 자유로운 토의 및 의사진행이 위축되거나 관할관청의 업무추진에 부담이 됨으로써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정보 비공개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위 결정 중 이 사건 심의자료에 관한 비공개 결정 부분을 '이 사건 제2 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처분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3) 이에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2. 9.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3)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 전체의 운송수입 총합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총합을 공개하였으나, 이는 전라북도가 이 사건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편집한 자료로서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보고서 자체와 동일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공개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이의신청을 모두 기각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업체별 운송수입, 운송원가는 감사보고서에 포함되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이라 한다)에 따라 일반에 모두 공시되는 정보로서, 단지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 중 일부⁴⁾가 외부감사법상 이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고 하여 이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설령 이 사건 보고서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이 실제 운송거리보다 부풀려진 거리를 기준으로 운임을 정하여 피고에게 신고함으로써 그동안 과다한 운임을 징수해 부당한 이득을 얻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조 나목의 '위법 · 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아울러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함에도 이 사건 보고서의 전부에 관하여 공개를 거부한 점에서도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4) 참가인을 제외한 앞서 언급한 4개 업체



이 사건 심의위원회는 이미 2017년도 보조금 지급결정을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의자료는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준에 의해 보조금이 지급되었다면, 이 사건 심의자료를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므로, 보조금의 결정근거와 집행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크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제2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이 사건 제1 처분에 관하여

운송원가명세서는 이를 통해 업체의 원가 구성, 원재료 등의 구입가격, 인건비 수준 등 업체의 민감한 경영자료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고, 운송원가는 외부감사법 기타 관련 법령상 공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주주와 채권자가 아닌 자는 재무제표를 열람할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법에 의하더라도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등을 공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역시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이 사건 보고서에는 이와 같이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별 재무현황, 수지분석, 노선현황 등 구체적이고 세밀한 경영상태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보고서는 그 산출방식의 성질상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보고서는 그 전부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아가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의 운임 과다책정은 오히려 보조금의 지원기준이 되는 노선손실액이 감소하는 요인이 되고, 운임은 단지 업체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를 평가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는 업체별 부당이득의 규모나 환수 범위와는 무관하므로,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제2 처분에 관하여

이 사건 심의자료는 매년 시행되는 보조금 지원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또는 이에 준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지원 방안 모색 및 적극적 의견제시 등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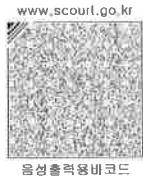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원칙적 공개대상으로 하면서, 다만 사업체인 법인 등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의 유출을 방지하여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여 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두17503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보고서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보고서에는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별 2016년도 차량·노선·재무현황, 운송수입 등 영업수익과 운송원가의 분석, 노선별 손익 산정결과 등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 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고서에 포함된 위 자료들이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그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보고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식회사는 외부감사법 제4조 제1항 및 제23조 제5



항 등에 따라 재무제표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정보들은 그 자체로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 중 참가인⁵⁾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에 있어서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여 외부감사법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비치·공시할 의무가 없더라도 이로 인하여 위 나머지 업체들의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에 기재되는 정보들의 성격이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② 이 사건 보고서에 포함된 위 자료들은 통계적·회계적인 자료에 불과하고,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만의 특별한 영업수단이나 방법에 관련된 자료라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위 자료가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의 사업활동에 반드시 유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 국민에 의한 감시의 필요성이 크고 이를 감수하여야 하는 면이 강한 공익법인에 대하여는 다른 법인 등에 비하여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보다 소극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이 비록 사기업이기는 하나,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 해에 수십억 원⁶⁾의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특수성

-
- 5) 참가인은 외부감사법 규정에 따라 운송수입과 운송원가가 포함된 재무제표(손익계산서 포함)와 감사보고서를 매년 공시하고 있다(갑 제12호증 참조).
- 6) 2017년도의 경우 참가인 4,480,583,000원, 유한회사 호남고속 1,828,664,000원, 주식회사 전주고속 1,220,775,000원, 주식회사 대한고속 1,090,199,000원, 주식회사 안전여객 1,488,095,000원의 보조금을 각 지급받았다(갑 제6호증 참조).



과 그들이 영위하는 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면, 그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민적 감시의 필요성이 공익법인 못지않게 요구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은 이러한 국민적 감시를 감수하여야 할 위치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④ 이 사건 보고서는 전라북도가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할 적정한 보조금의 산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의 결과물이다. 그런데 이 사건 업체들이 기존에 실제 운송거리보다 긴 거리를 운송하는 것처럼 노선인가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책정된 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어 온 사실이 있는 만큼,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지급할 보조금과 관련한 전라북도의 예산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게 요구된다.

⑤ 이 사건 보고서의 공개로 인해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의 사업활동에 다소간의 지장이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달성하게 될 위와 같은 공익과 비교·교량하여 보면, 이 사건 보고서의 공개로 인하여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이 입을 불이익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없다.

⑥ 이 사건의 피고 측과 달리 전주시, 아산시, 태백시, 청주시와 충청북도는 시·도 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내버스와 시외버스의 운송원가 등을 산정한 용역보고서를 일반에 모두 공개한 것을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을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

⑦ 참가인 등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고서의 비공개 의견을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 제11조 제3항 및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정보공개 여



부를 결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제3자와의 관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를 따른 것에 불과 할 뿐, 제3자의 비공개요청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두868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보고서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제1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제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이라고 한 규정형식과 같은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의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회의 관련 자료나 의사결정 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은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등 참조).

다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정보공개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 심의자료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심의자료는 전라북도청 건설교통국이 개최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가 이 사건 보고서 등을 토대로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에 대한 보조금의 적정지급 방안을 심의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에 제공된 자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의자료는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광 제14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이 이 사건 심의자료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심의자료가 공개되더라도 이 사건 심의위원회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관한 정보는,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감시를 통해 예산집행의 합법성·효율성 확보라는 공익을 실현하고, 예산이 부적절하게 집행되거나 낭비되었을지 모른다는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공개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다.



② 2017년도 보조금 지급 방안을 결정하기 위한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이미 완료되어 이 사건 시외버스 업체들에게 2017년도 보조금이 전부 지급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의자료의 공개로 인해 피고나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2017년도 보조금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여지가 없다.

③ 이 사건 심의자료에는 주로 통계자료와 회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심의 대상으로 삼을 보조금 지급 방안에 관한 여러 안건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작성자의 의견, 심의위원들의 성명이나 발언 내용 등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자료가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압력 등으로 향후 이 사건 심의위원회의 보조금 심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방해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이 사건의 피고와 달리 전주시가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13. 11.경 작성된 '시내버스 재정지원 심의위원회 회의자료' 중 발언자의 이름을 제외한 대부분을 공개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심의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정당한 근거나 사유를 찾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의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제2 쳐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최치봉

최치봉





온라인 судебный код

판사

최미영

최미영

판사

신태광

신태광



[별지 1]

보고서의 표시

○ 표제

- 전라북도 2017년 시외버스 비수익노선 손실액 산정 용역 최종 보고

○ 작성자

- 태성회계법인. 끝.





[별지 2]

심의자료의 표시

- 2017. 3. 31.자 '17년도 버스재정지원 및 용역 추진 관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2017. 8. 28.자 '17년도 버스재정지원 및 용역 추진 관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2017. 10. 30.자 '17년도 버스재정지원 및 용역 추진 관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2017. 12. 4.자 '17년도 버스재정지원 및 용역 추진 관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 2017. 12. 12.자 '17년도 버스재정지원 및 용역 추진 관련 버스지원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끝.





[별지 3]

관계 법령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 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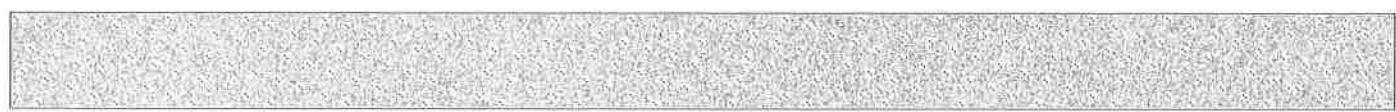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자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1조(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①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
을 요청할 수 있다. 끝.





www.scourt.go.kr

증정출판용바코드

정본입니다.

2019. 5. 23.

전주지방법원

법원사무관 정인호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전주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7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